

분쟁광물 관리 절차

1. 목적

코스탯아이앤씨의 해당 분쟁광물 원료에 의한 윤리표준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합리적인 경우 제조된 제품중 함유한 탄탈, 주석, 텅스텐과 금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자금 제공 혹은 콩고민주공화국 혹은 그 주변 국가/지역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조직에 사용되는 등의 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절차를 제정함.

2. 책임부서

구매부서는 본 절차 규정에 의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및 조사 실시 및 분쟁광물 사용금지 책임. 기타 관련부서도 엄격히 본 절차를 집행해야 함

3. 이행 절차 및 협력사 관리

1) 분쟁광물 정의

- 분쟁광물은 일반적으로 일부 정치적 혼란 국가와 지역(예:콩고) 주변에서 채굴 및 이와 같은 광물 채굴로 종종 정치적 긴장 및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광물임
- 현재 전자기기 업종 중 분쟁광물은 탄탈, 주석, 텅스텐과 금을 가르킴

2) 당사는 분쟁광물 구매불가 및 사용도 지지도 하지 않으며 모든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이 요구를 하위 협력사까지 전달할 것을 요구함

3) 구매부서에서 해당 제도를 제정하고 당사 및 협력사의 엄격한 집행 여부를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재 부서에서도 본 절차에 의해 분쟁광물의 공급망을 점검 실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점검 세부조치 내역을 제공해야 함

4) 해당 업무 주관인력은 반드시 엄격히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직분을 지키며 회사에 보증과 약속을 하여 표준요구와 제도규정의 집행을 확보해야 함

5) 업무활동 중 각 주관부서는 공급업체, 협력업체, 도급업체에 영향력을 가하여 공동약속 및 상호감독을 실시하여 (분쟁광물 불사용 준수서약서)를 체결함

6) 협력사들이 광물사용 명세를 업데이트 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구하며 분쟁광물 사용 발견 시 즉시 사용금지 요구 혹은 해당조치 실시

1) 제보전화, 이메일 등 정보교류, 커뮤니케이션, 협상 경로를 설립하여 감독접수

4. 개선관리

1) 분쟁광물 사용 발견 시 즉시 사용중단 및 미 사용 공급처 변경

2) 대체 원재료 개발 등